[1심]

數字天堂 v 柚子 1심 민사판결 1심: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

사례 번호: (2015) Jingzhi Min Chu Zi No. 631

조치원인: 저작권 계약 분쟁 심판 날짜: 2018년 4월 12일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 민사 판결 (2015) Jingzhi Min Chu Zi No. 631

원고인 數字天堂(Digital Paradise (Beij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은 베이징 하이 데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Wang An, 이사회 의장.

베이징 Jijia Law Firm 변호사 Zhou Dandan.

베이징 Jijia 법률 사무소 변호사 Wang Heshu.

피고인 柚子 (北京) 科技有限公司(Grapefruit (Beijing) Technology Co., Ltd.)의 주소는 베이징 하이뎬 구입니다.

법률 대리인 Liu Xin, 총책임자.

베이징 Shengfeng 법률 사무소의 Yu Guofu 변호사.

베이징 Haotianxinhe 법률 사무소의 Liu Yuping 변호사.

피고인 柚子 (北京) 移动技术有限公司 (Youzi(Beijing) Mobile Technology Co., Ltd).

법률 대리인 Liu Xin, 총책임자.

베이징 Shengfeng 법률 사무소의 Yu Guofu 변호사.

공식 대리인 Zou Da, Youzi (Beijing) Mobile Technology Co., Ltd.의 기술 이사

원고 Digital Paradise (Beij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이하 Digital Paradise Company) v. 피고 Youzi (Beijing) Technology Co., Ltd.(Pomelo Technology Company), 피고 Pomelo(Beijing) Mobile Technology Co., Ltd.(Pomelo Mobile Company)

* 본 문서에서는 Digital Paradise (Beijing) Network Technology Co., Ltd.를 數字天堂으로, Youzi (Beijing) Technology Co., Ltd.(Pomelo Technology Company)와 피고 Pomelo(Beijing) Mobile Technology Co., Ltd.(Pomelo Mobile Company)를 합쳐서 柚子로 지칭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본 법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락 후 법률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기간 내에 사건의 관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법정항변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년 6월 24일, 본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31호 민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관할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항소했다. 2015년 8월 31일,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은 Gao Min Zhong Zi No. 3610호에 대한 민사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의 위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본 법원에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따르면 2016년 4월 18일 법원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감정기관은 2016년 7월 4일과 2017년 5월 4일에 각각 이 법원에 감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원은 2017년 10월 19일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소송 절차에는 원고 數字天堂의 Zhou Dandan 및 Wang Heshu 변호사, 피고 柚子의 Yu Guofu 및 Liu Yuping, 피고 柚子의 Yu Guofu 및 Zou Da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원고인 數字天堂은 원고가 HBuilder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9월 원고는 두 피고인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APICloud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PICloud 소프트웨어는 비교 후 원고의 HBuilder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에서 3가지 플러그인(코드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수정 및 보기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를 표절했습니다. 두 피고의 행위는 HBuilder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원고가 향유하는 복제, 수정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2명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 1. 웹사이트 www.apicloud.com, Weibo, WeChat 공식 계정, Sina.com, 36Kr.com, CSDN.com 및 기타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1개월 연속 사과문을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고 원고의 코드를 제거합니다. (영향을 삭제하다?)
- 2.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당한 비용 350만 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이 중 합리적인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20만 위안, 공증료 24,330 위안, 국립중앙도서관 파일이체료 270 위안 이 포함됩니다. 다 합쳐서 224,600위안입니다.

피고인 柚子는 공동으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1. 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는 GPL 계약에 따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브랜치입니다. GPL 계약의 조항에 따르면 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는 GPL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타사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모든 타사는 해당 코드를 사용하고 GPL 계약의 승인을 받은 제품의 파생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PICloud의 소프트웨어에서 원고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두 피고의 피고인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 2. 피고인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피고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원고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온라인 시간이 짧고 원고와 피고 모두의 경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침해 혐의가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사용한 코드의 양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피고인은 주관적 악의가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柚子는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시기와 관련된 사실

2013년 10월 21일 원고는 HBuilder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 3월 30일 현재 소프트웨어는 버전 5.5.0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이 버전이 이 사건의 식별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피고는 원고가 HBuilder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의 사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증명서", (2015) Jing Fang Neijing Zheng Zi No. 7195 공증 증명서, 법원 녹취록 등의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2. 침해 혐의에 관한 사실

2015년 4월 1일 원고는 피고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 APICloud 1.1.12를 다운로드받았고 피고는 피고 2명이 사용자에게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버전에 국한되지 않고 2014년 9월 15일 공식 웹사이트에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시점부터 2015년 말까지 공개된 두 피고인의 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드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 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에서 수정하면서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및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가 해당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 APICloud가 그것입니다. 원고는 신원 확인을 위해 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코드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 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에서 수정하면서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및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가 해당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 APICloud에 대해 원고는 신원 확인을 위해 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본 법원은 산업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집적회로진흥센터 지식재산사법감정원에 APICloud 1.1.12 피고 버전과 원고 버전 간 신원 확인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HBuilder.window.5.5.0의위의 검사 자료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평가 기관의 주요 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의 경우: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30개 중 29개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 2. 기능 플러그인을 실행하는 실제 기계의 경우,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의 23개 소스 코드 중 18개 소스 코드 파일이 원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 3. 기능 플러그인을 수정하면서,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는 56개이며, 44개의 소스 코드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피고는 피고의 신청 및 상기 감정의견에 기초하여 원고의 상기 소프트웨어가 이전 제3자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동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기관에 2차 감정을 의뢰했으며, 앞서 언급한 감정의견에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소스코드와 두 피고인이 제공한 다수의 오픈소스 및 제3자 소프트웨어이다. 실제 머신 실행 기능과 수정 및 보기 기능과 관련된 775개의 파일이 있으며 코드 입력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기관의 2차 감정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일한 코드입력기능 플러그인의 29개 소스코드를 피고가 제공한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비교한 결과 대응관계가 없습니다. 즉 동일하지 않습니다.
- 2. 동일한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의 18개 소스 코드를 피고가 제공한 이전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비교하여 총 13개의 소스 코드 파일이 동일한 기능 플러그인의 44개 소스 코드 비교한 결과 피고가 제공한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총 2개의 소스코드 파일이 동일합니다. 양 당사자는 위의 평가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의 사실은 (2015) Beijing Fangzheng Nei Jing Zheng Zi No. 7186 Notary Certificate, Gongxin Promotion Si Jian Center [2016] Zhi Jian Zi No. 251 Judicial Appraisal Opinion, 법원 녹취록 등의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사실:

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버전 5.5.0)에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줄여서 GPL)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 29일에 발행된 계약의 버전 3에는 다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 섹션, "프로그램"은 이 라이센스에 따라 승인된 저작권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는 것은 저작권 허가가 필요한 그대로 복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전체 또는 약간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작업을 이전 프로그램의 "개정된 버전" 또는 이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5항, 개정된 소스 코드 버전 릴리스, 귀하는 4항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스 형식으로 배포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a) ... b) ... c) ...: 본 라이센스 및 섹션 7의 추가 조항은 프로그램 패키지 형식에 관계없이 전체 프로그램 및 그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보호되는 프로그램과 다른 독립 프로그램의 공동 작업의 경우 공동 작업이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아니거나 일부 저장 또는 배포 매체에서 더 큰 프로그램을 생성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그리고 공동 저작물과 그에 따른 저작권이 컴파일링 사용자의 접근이나 개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넘어선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공동 저작물을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보호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집합체는 이 사용권을 해당 집합체의 다른 부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7조...귀하는 예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및 개정과 관련하여 GPL의 모든 측면을 준수합니다. 예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파생물이 아니라 수정된 버전의 식별 가능한 부분이며, 예외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합리적으로 별도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외된 모든 프로그램은 파생물이 아니라 수정된 버전의 식별 가능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및 예외 프로그램 자체는 합리적으로 별도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별도의 프로그램이며 원래 라이센스가 부여된 예외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될 수 있지만 예외프로그램 자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Aptana가 귀하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의 목적 코드 또는 실행 형식은 해당 기계 판독 가능한 완전한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되며, 동일한

매체에 있는 이 부분의 해당 목적 코드 또는 실행 형식은 해당 개체 코드 또는 실행 형식으로 해당 예외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의 양식은 GPL에 따라 본 프로그램과 통합된 예외 프로그램이나 저장 또는 배포 미디어 볼륨의 수정된 버전은 집합체입니다.

재판과 검사 후 두 피고인은 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버전 5.5.0)가 압축 패키지로 다운로드되었으며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압축 해제 후 원고가 주장하는 3개의 기능 플러그인은 3개의 독립적인 폴더 형태로 존재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GPL 계약이원고의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와 관련된 3개 모듈의 폴더에 존재하지 않으며계약이 다른 폴더에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3가지 기능 플러그인이GPL 계약에 따른 파생 제품이 아닌 독립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3가지기능에 해당하는 3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 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각각: 코드 입력 방법 플러그인(CIMplugin), HTML 애플리케이션 실제 머신 공동 디버거 플러그인(ACRplugin), HTML 코드 인스턴트 렌더링 플러그인. 두 소프트웨어는 2013년 8월 10일에 처음 게시되었으며 후자는 2013년 12월 13일에 게시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등록증의 진위를 인정했다.

위의 사실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저작권 등록 증명서, (2015) 베이징 방정 네이징 정쯔 7187호 공증 증명서, 당사자가 제출한 반대 심문, 법원 재판 녹취록, 인터뷰 녹취록 등의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4. 기타 사실

(1) 피고가 악의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사실

침해가 의심되는 APICloud 소프트웨어의 ResetPwdll.dll 파일 속성에 표시되는 디지털 서명은 "數字天堂"입니다. 원고는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소프트웨어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표절하고 그 악의가 명백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회사의 자의적인 비방과 루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APICloud로 과대 광고에 의한 회사의 인기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이 두 피고인이 악의적이라는 것도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실 및 합리적인 비용:

피고인이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플랫폼에는 10만 명이 넘는 모바일 개발자가 있으며, 올해(2015년) 4월 말 현재 개발자 수의 증가율은 총 지난 6개월 간의 합이다". 원고는 이 숫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개발자의 수와 사용자의 수는 다르다고 믿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200,000 위안, 공증 비용으로 24,330 위안, 국립 도서관 검색 비용으로 270 위안을 지불했습니다.

위의 사실은 (2015) Jing Fang Zheng Nei Jing Zheng Zi No. 6284 공증 증명서, 변호사수수료 청구서, 공증 수수료 청구서, 검색 수수료 청구서, 공증 사무소 명세서 및 기타 증거와 같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며, 피고는 원고를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플러그인, 즉 코드 입력 방식 플러그인,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수정 및 보기 기능 플러그인은 소송과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속합니다. 원고는 저작권을 향유하고 저작권법 제10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정 및 복제의 권리와 사용방법은 정보통신망의 보급권에 의하여 통제됩니다.

두 가지 평가 의견에 따르면, 입력기 기능 플러그인의 경우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의 30개 소스 코드 중 29개 소스 코드 파일이 원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 23 소스 코드 중 18 소스 코드 파일이 원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하며, 변경하면서 조회되는 기능 플러그인의 경우 56개 중 44개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앞서 언급한 동일한 소스 코드 중 소수의 소스 코드만이 타사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합니다. 피고인의 침해 소프트웨어는 원고의 소프트웨어에 있는 대부분의 파일을 복사하고 그 중 일부만 수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침해 혐의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의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위의 행위를 한 경우에 두 피고인이 법정 방어상의 이유가 없는 한 위 행위는 원고의 위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피고인은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GPL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제3자는 다음의 승인 하에 코드를 사용하고 파생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2명이 HBuilder 소프트웨어에서 3개의 플러그인을 사용했고, 3개의 플러그인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3개의 플러그인이 GPL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3개의 플러그인이 모두 별도의 폴더에 있고 폴더에 GPL 오픈소스 프로토콜 파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GPL 오픈소스 라이선스 파일이 없습니다. GPL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GPL 계약의 라이선스 대상은 GPL 계약의 라이선스에 따라 승인된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및 파생 제품 또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개정판입니다. 원고와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에 대해, 그들이 위치한 폴더에는 GPL 오픈소스 계약 파일이 없으며,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GPL 오픈소스 계약 파일이 없습니다. HBuilder 소프트웨어에는 GPL 오픈소스 계약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계약 문서

이지만 계약이 케이스에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므로 케이스에 포함된 3개의 플러그인은 파생 제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는 계약서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수정 사항이며, 두 피고인이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믿는 경우 관련 방어 근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행위는 저작권 소유자의 복제, 개작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한 자는 피해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침해 주장은 원고의 저작물 수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2인이 사과하고 영향을 제거한 민사책임을 져야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Sina.com과 같은 타 플랫폼은 피고 2명이 운영하지 않고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사과 및 타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 제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일부터 10,000위안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 법원은 (2015) Jing Zhi Min Zhong Zi No. 1055 사건에서 이 조항의 법정 손해 배상 한도액 500,000위안이 전체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다수의 침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배상액은 500,000위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3개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관한 경우에 피고 2명의 행위는 각각 위의 3개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배상액은 1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125만 위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두 번째 피고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표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된 침해 소프트웨어는 원고와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 중 특히 코드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과 변경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 플러그인의 관련 파일을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배제하지만 지식에 근거한 표절일뿐입니다.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에 원고의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두 피고가 표절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시켜 줍니다. 피고인 2명은 표절을 안다는 조건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원고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주관적인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고소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절대 수와 그 증가율입니다. 두 피고인은 공식 계정에서 "현재 플랫폼의 모바일 개발자는 10만 명이 넘고, 올해(2015년) 4월 말 현재 개발자 수의 증가율은 지난 6개월수를 합한 것이다."라고 밝혔으나 이용자 수와 차이가 있으나 충분한 증거나 해명이 되지 않아 위의 사실 또한 보상액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20만 위안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본 법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의 복잡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공증 수수료 24,330위안은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해당 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비용 270위안은 법원이이를 뒷받침합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기소 이유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있으며, 본 법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3조, 제10조, 제1항(3), (5), (12),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원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 柚子는 이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식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챗 공개계정의 1개월 연속 우월적 지위에 대해 원고인 數字天堂에게 사과하고 그 영향을 없앱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數字天堂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피고 柚子는 원고에게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25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지출 비용은 21만 위안이다.

원고인 數字天堂의 다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柚子가 이 판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제25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합니다.

34,800 위안의 사건 수락 수수료는 피고 柚子가 부담합니다(본 판결 발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두 가지 감정 수수료는 피고 柚子가 부담합니다. 최초 감정 수수료 150,000위안은 원고 數字 天堂이 지불합니다. 피고 柚子는 원고 數字天堂에게 이 판결이 발효되는 날짜로부터 10일 이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사건 항소 수락 수수료를 지불하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루이 송옌 판사 인민평의원 왕홍보 인민 평가원 Guo Yanqin 2018년 4월 12일 부심판 저우원쥔 서기 송윤연

[2심]

Youzi(Beijing) Mobile Technology Co., Ltd.와 Digital Paradise(Beijing) Network Technology Co., Ltd. 간의 2심 민사판결

재판 법원: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

사례 번호: (2018) Jingmin Zhong No. 471

조치원인: 저작권 계약 분쟁 심판 날짜: 2019년 11월 6일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 민사 판결

(2018) 종징민 471호

항소인(원심 재판의 피고): Youzi (Beijing) Technology Co., Ltd., 주소: 베이징 하이뎬 구. 법적 대리인: Liu Xin, 총책임자.

대리인 광고: Beijing Zhonglun Law Firm 변호사 Zhao Gang.

변호사 소송: Li Dexing, 남성, 1988년 1월 6일생, 한쪽, Youzi (Beijing) Technology Co., Ltd.

베이징 하이뎬 구에 거주하는 회사의 엔지니어.

항소인(원심 피고): Youzi(Beijing) Mobile Technology Co., Ltd., 주소: 베이징 하이뎬 구.

법적 대리인: Liu Xin, 총책임자.

대리인 광고: Beijing Shengfeng Law Firm 변호사 Yu Guoqiang.

대리인 광고: Beijing Zhonglun Law Firm의 변호사 Dai Yue.

피항소인(원심 재판의 원고): 베이징 하이뎬 구에 소재한 Digital Paradise (Beijing) Network Technology Co., Ltd..

법적 대리인: Wang An, 이사회 의장.

변호사 광고: Beijing Jijia Law Firm 변호사 Zhou Dandan.

변호사 광고: Beijing Jijia Law Firm 변호사 Wang Heshu.

항소인인 柚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베이징 지식재산권 재판소 Beijing Intellectual Property Court(2015) Jing Zhi Min Chu Zi No. 631 민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사건을 수리한 법원은 법률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10월 31일 공청회를 열었다. 항소인 柚子의 소송 변호사 Zhao Gang과 Li Dexing, 항소인 柚子의 소송 변호사 Yu Guoqiang 및 Dai Yue, 그리고 항소인 數字天堂의 소송 변호사 Zhou Dandan 및 Wang Heshu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柚子의 항소 요청:

1. 원판결의 취소 2. 數字天堂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수정합니다. 사실관계:

첫째, 1심 판단은 數字天堂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동일한 코드파일의 명칭, 수량, 개수 등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둘째, 數字天堂의 Hbuilder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GPL 계약에 구속되어야 하며, Hbuilder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관련 플러그인에는 많은 양의 오픈 소스 또는 타사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GPL 계약의 조항에 따라 오픈소스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1심 판결은 數字天堂의 소프트웨어 중 상당 부분이 제3자 코드에서 온 것이며, 보상액이 법정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보상액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요컨대 2심 법원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數字天堂은 원심판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판결에서 결정된 보상 금액은 관련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數字天堂은 원판결을 따릅니다.

數字天堂은 柚子에

- 1. 1개월 동안 자사 홈페이지 www.apicloud.com, Weibo, WeChat 공식 계정, Sina.com, 36Kr.com, CSDN.com 및 기타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위치에 성명을 게시하여 數字天堂에 사과해 영향(피해)을 제거합니다.
- 2. 數字天堂에 대한 공동 배상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3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200,000위안, 공증 비용 24,330위안, 국립 도서관 파일 전송 비용 270위안, 총 224,600위안이 포함됩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數字天堂은 HBuilder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 3월 30일 현재 소프트웨어는 버전 5.5.0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이 버전이 이 사건의 식별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柚子은 數字天堂을 HBuilder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2015년 4월 1일 數字天堂은 柚子가 공동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 APICloud 1.1.12를 다운로드받았습니다. 數字天堂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가 이버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말까지 소프트웨어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밝혔습니다.

코드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 數字天堂의 HBuilder 소프트웨어에서 수정하면서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및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가 해당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된 소프트웨어 APICloud에서 數字天堂은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쌍방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산업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집적회로진흥센터지식재산사법감정원에 柚子의 APICloud 1.1.12 버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柚子 및 HBuilder.window.5.5.0 버전의 신원 식별, 양 당사자는 위에서 언급한 검사 자료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주요 감정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數字天堂 소프트웨어

- 2. 실행 중인 실제 기계의 플러그인 기능의 경우, 침해 혐의 소프트웨어의 23개 소스 코드 중 18개 소스 코드 파일이 數字天堂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 3. 기능 플러그인 수정 및 보기, 56개의 침해 주장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소스 코드에는 數字天堂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한 44개의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柚子는 柚子의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數字天堂의 소프트웨어가 이전 제3자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동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기 감정의견을 기초로 1심 법원에 감정기관을 위탁하여 2차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감정대상은 앞서 언급한 감정의견에서 동일하다고 확인된 소스코드 및 다수의 오픈소스 및 제3자 柚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실제 기계의 작동 기능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여 130개 파일, 변경하면서 보기기능이 포함된 775개 파일이 있지만 코드 입력 기능이 포함된 파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기관의 2차 감정평가 의견은

- 1. 동일코드 입력기능 플러그인의 29개 소스코드를 柚子가 제공한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비교했을 때 해당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2. 동일한 실제 머신 실행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 18개를 柚子에서 제공한 이전 소프트 웨어 소스 코드와 비교하여 총 13개의 소스 코드 파일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柚子에서 제공한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로 보는 동안 변경 기능이 있는 동일한 기능 플러그인의 소스코드 44개를 비교하여 총 2개의 소스코드 파일이 동일하다. 양 당사자는 위의 평가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數字天堂 HBuilder 소프트웨어(버전 5.5.0)에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계약이라고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6월 29일에 릴리스된 계약의 세 번째 버전에는 다음과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정의 섹션, "프로그램"은 이 라이센스에 따라 승인된 저작권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는 것은 저작권 허가가 필요한 그대로 복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전체 또는 약간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결과를 이전 프로그램의 "개정된 버전" 또는 이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5항, 개정된 소스 코드 버전 릴리스, 4항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스 형식으로 배포하거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a)...b)...c)...본 라이센스 및 섹션 7의 추가 조항은 프로그램 패키지 형식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전체 및 그 일부에 적용됩니다. ...d) ...보호된 프로그램과 다른 독립 프로그램의 결합 작업이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아니거나 일부 저장 또는 배포 매체에서 더 큰 프로그램을 생성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공동 저작물 및

이에 따른 저작권이 컴파일링 사용자의 액세스 또는 개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넘어서는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보호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집합체는 이 사용권을 해당 집합체의 다른 부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7조...귀하는 예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및 개정과 관련하여 GPL의 모든 측면을 준수합니다. 예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파생물이 아니라 개정판의 식별 가능한 부분이며, 예외 프로그램 자체는 합리적으로 별도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모든 예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파생물이 아니라 개정판의 식별 가능한 부분입니다. Aptana가 귀하에게 배포하는 양식에 예외 프로그램 자체는 합리적으로 별도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 및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원래 라이센스가 부여된 예외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될 수 있으며 예외 프로그램 자체는 다음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 코드 또는 실행 형식은 해당 기계 판독 가능한 완전한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되며, 동일한 매체에 있는 이 부분의 해당 목적 코드 또는 실행 형식은 해당 개체 코드 또는 실행 형식으로 해당 예외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의 양식은 GPL에 따라 본 프로그램과 통합된 예외 프로그램이나 저장 또는 배포 미디어 볼륨의 수정된 버전은 집합체입니다.

1차 체험 후, 柚子는 數字天堂 HBuilder 소프트웨어(버전 5.5.0)가 압축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되었으며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압축 해제 후 數字天堂이 주장하는 세 가지 기능 플러그인은 세 개의 개별 폴더 형태로 존재합니다. 柚子도 數字天堂의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와 관련 3개 모듈의 폴더에 GPL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폴더에 계약이 존재함을 인지하였습니다.

數字天堂이 주장하는 세 가지 기능 플러그인이 GPL 계약에 따른 파생 제품이 아닌 독립 소 프트웨어임을 증명하기 위해 數字天堂은 위 세 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세 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 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드 입력 방식 플러그인[약어: CIMplugin], HTML 응용 프로그램 Real-Machine Debugger 플러그인[약어: CRplugin], HTML 코드 인스턴트 렌더러 플러그인입니다. 처음 두 소프트웨어는 2013년 8월 10일에 처음 게시되었으며 후자는 2013년 12월 13일에 게시되었습니다. 柚子는 소프트웨어 등록 인증서의 진위를 인정합니다.

APICloud 소프트웨어가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ResetPwdll. dll 파일의 속성에 표시되는 전자 서명은 "數字天堂"입니다. 數字天堂는 이 사실만으로도 피의자 소프트웨어가 數字天堂의 표절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2015년 6월 5일 柚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자의적인 비방 및 루머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APICloud 사용 인기에 대한 과대광고를 없애겠다"고 게시했습니다. 數字天堂은 이 사실이 柚子이 악의적이라는 것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柚子가 WeChat 공개 계정에 게시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100,000명이 넘는 모바일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 간의 합계입니다". 數字天堂은 이 숫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수를 증명할 수 있

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柚子는 개발자 수와 이용자 수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數字天堂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 20만 위안, 공증비 2만4330위안, 국립중앙도서관 검색비 270위안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에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며, 柚子는 숫자천당을 저작권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플러그인, 즉 코드 입력 방식 플러그인,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수정 및 보기 기능 플러그인은 케이스와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만, 플러그인은 별도로 저작권이 있으므로 독립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속합니다. 數字天堂은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數字天堂의 주장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사용권의 수정, 복사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에 대한 권리는 사용권에 의해 통제됩니다.

두 번의 평가 의견에 따르면, 입력 방식 기능 플러그인의 경우 침해 혐의 소프트웨어의 30개 소스 코드 중 29개 소스 코드 파일이 數字天堂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기계 실행 기능 플러그인,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23개의 소스 코드 중 18개의 소스 코드 파일이 數字天堂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와 동일하며, 기능 플러그인을 보면서 수정한 경우, 56개의 침해피의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중 44개가 숫자천당의 소스코드와 동일하며, 자사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코드는 동일하다. 앞서 언급한 동일한 소스 코드 중 소수의 소스 코드만이 타사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합니다. 피의자 침해 소프트웨어가 數字天堂 소프트웨어에 있는 대부분의 파일을 복사하고 일부만 수정한 것을 알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는 柚子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운로드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통신권의 보호범위에 속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위의 행위가 數字天堂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柚子에 대한 법적 방어가 없는 한 위 행위는 數字天堂의 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數字天堂은 柚子가 HBuilder 소프트웨어에서 3개의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3개의 플러그인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3개의 플러그인에 GPL 라이선스의 제한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기간동안 柚子는 세 가지 플러그인이 모두 별도의 폴더에 있으며 이 폴더에 GPL 오픈 소스 계약 파일이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GPL 오픈소스 라이선스 파일이 없습니다. GPL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GPL 계약의 라이선스 대상은 GPL 계약의 라이선스에 따라 승인된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제품 또는 개정 판입니다. 數字天堂의 경우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의 경우, 해당 플러그인이 위치한 폴더에 GPL 오픈 소스 계약 파일이 없으며,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에 GPL 오픈소스계약 파일이 없습니다. GPL 오픈소스계약 파일이지만, 이 계약은 케이스에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므로, 케이스에 포함된 3개의 플러그인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야하는 파생 제품이나 개정판에 속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數字天堂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관련 방어 근거가 확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행위는 저작권소유자의 복제, 개작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침해 주장은 數字天堂의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柚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만 사과하고 피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Position 및 WeChat 공식 계정은 數字天堂에 사과하고 영향을 제거하는 성명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數字天堂이 주장하는 시나닷컴 등 타플랫폼은 柚子가 운영하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數字天堂은 타 플랫폼에 사과를 요청하고,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數字天堂이 數字天堂이 손해보고 柚子가 수익을 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數字天堂의 손실과 柚子의 이익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이하의 값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이 3개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관한 경우, 柚子의 행위는 각각 위 3개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액은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125만 위안으로 결정됐다. 첫째, 柚子의 표절은 명백히 악의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된 침해 소프트웨어는 數字天堂의 경우, 특히 코드 입력 방식 플러그인과 변경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 플러그인에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 관련 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며 지식에 기반한 표절만이 가능합니다. 침해 혐의 소프트웨어에 數字天堂의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柚子가 표절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시켜 줍니다. 표절을 알린 경우 柚子가 공식 홈페이지에 數字天堂에 대한 허위 진술을 게시하는 등 주관적인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고소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절대 수와 증가율입니다. 柚子는 공식 계정에서 "플랫폼에는 현재 100,000 이상의 모바일 개발자가 있습니다. 올해 4 월 말 현재 개발자 수의 증가율은 지난 6개월을 합한 것입니다. 柚子는 개발자 수와 이용자 수는 다르다고 믿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도 보상액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數字天堂이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20만 위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의 복잡성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지지됩니다. 공증 수수료 24,330위안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數字天堂가 해당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비 270위안을 지원합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조항 3조, 10조 1항, 3조 5항, 12조, 48조 및 49조에 따른 1심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柚子는 이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식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WeChat 공개 계정의 눈에 띄는 위치에 1개월 연속으로 성명을 게시하여 數字天堂에 사과합니다. 또한 그 영향을 제거 [진술서 내용은 본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數字天堂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필요한 비용은 柚子가부담함]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數字天堂에 125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21만위안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 3. 數字天堂의 기타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 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2015) Jingfang Neijing Zhengzi No. Industry Information Promotion Division Jian Center [2016] Zhijian Zi No. 251 Judicial Opinion, "GNU General Public License Agreement", 저작권 등록 증명서, (2015) Beijing Fangzheng Nei Jing Zheng Zi No. 7187 공증 증명서, (2015) Beijing Fangzheng Nei Jing Zheng Zi No. 6284 공증, 변호사 비용 청구서, 공증 수수료 계산서, 검색 수수료 계산서, 공증 사무소 명세서 및 기타 증거가 파일에 보관되어 있으며 본 법원이 이를 확인합니다.

2심 소송에서 柚子는 (2018) Beijing Fangzheng Nei Jingzheng Zi No. 01807 공증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법의학 검증을 다시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신원 확인 문제를 신청했습니다.

- 1. Eclipse 메인 소프트웨어에서 관련 ins 분리 가능 Windows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실행
- 2. 플러그인에 포함된 3개의 플러그인 소스 코드를 플러그인으로 컴파일하여 Eclipse 메인 소 프트웨어에서 플러그인이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확인
- 3. "org.apache" 및 "com.aptana" 접두어 파일 또는 디렉토리 JAR 파일 관련 3개 플러그인 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확인
- 4. 관련 3개 플러그인 파일의 디컴파일 코드는 (2018) Beijing Founder Neijing Zhengzi의 공증 증명서 No.01807에 있는 타사 코드 파일을 비교하여 동일성 또는 동일성 비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Aptana.core_3.3.0.201503251818.jar 파일의 디컴파일된 코드는 (2018) Jingfang Zhengnei Jingzhengzi No. 01807 공증 증명서의 타사 코드 파일과 비교하여 동일성 또는 동일성 비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數字天堂은 柚子가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복제, 수정, 정보통신망 유포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심 법원에 고소했다. 위의 사실은 柚子가 제출한 포렌식식별신청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21조에 따르면, 인증사항이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하기에 무의미한 경우 입증할 사실, 인민법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심 소송에서 2건의 법의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柚子는 1심 2건의 감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법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심 2심의 감정절차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柚子는 1심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소홀히 하고 2심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했는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柚子가 제출한 해당 포렌식식별신청 내용과 이 사건에서 입증되어야 할 사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본 법원은 柚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포렌식식별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 기간 동안 柚子는 관련된 세 가지 플러그인에 GPL 오픈소스 계약이 없고 Hbuilder 소프트웨어의 루트 디렉토리에 GPL 오픈소스 계약이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이 GPL 계약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는 柚子의 주장은 지지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있으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에 서 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자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 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며, 柚子도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저작 권자는 數字天堂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數字天堂이 세 개의 플러그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HBuilder 소프트웨어의 -in 數字天堂은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數字天堂은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플러그인, 즉 코드 입력 방식 플러그인, 실제 기계 실 행 기능 플러그인, 수정 및 보기 기능 플러그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건의 심사평에 근거: 입력기 기능 플러그인의 경우, 침해 피의자 소프트웨어의 30개 소스 코 드 중 29개 소스 코드 파일이 數字天堂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와 동일하며, 실 제 기계 실행 기능의 경우 플러그인, 피고인 침해 소프트웨어의 23개 소스 코드 중 18개 소 스 코드 파일이 數字天堂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와 동일하며, 시청 중 수정된 기 능 플러그인의 경우 56개 중 44개 고소된 침해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코드는 數字天堂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2차 시도에서 柚子는 입력기 기능 플러그인 에 있는 29개의 동일한 코드 파일 중 28개가 숫자나 단순한 그림임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png 이미지 파일은 28개 파일의 독창성 부족으로 數字天堂이 저작권 보호를 주장 할 권리가 없으며, 이 경우 침해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술한 침해 혐의 소프트 웨어는 數字天堂이 주장하는 HBuilder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 3개를 복사 및 수정하여 數字 天堂이 HBuilder 소프트웨어에 향유하는 복제 및 수정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모바일의 행 위는 침해를 구성하며,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數字天堂는 柚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APICloud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으며, APICloud가 數字天堂의 HBuilder 개발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3개의 플러그인 소스코드를 복사해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HBuilder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 이 사건에서 數字天堂가 제출한 자료는 HBuilder 소프트웨어가 Eclipse 플랫폼 프레임워크, Aptana 플러그인, 數字天堂이 Eclipse용으로 개발한 플러그인 및 타사에서 개발한플러그인을 포함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Eclipse의 경우 관련된 세 가지 플러그인이 HBuilder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의 다른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기존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柚子의 침해 주장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즉 HBuilder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침해행위는 1건의 침해행위여야 하며, 1심 법원은 이를 다수의 침해행위로 보고 이 오류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본 법원에서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침해자의 불법 소득에 의한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불법적 이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따라 50만 위안 미만의 배상액을 결정한다. 數字天堂의 경제 손실과 柚子의 불법적 이익을 입증할 해당 증거가 없는 한, 본 법원은 柚子의 주관적인

악의성, 침해 혐의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양, 침해 혐의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절대 수 및 성장률 및 기타 요인을 수정하고 보상 금액을 500,000으로 결정합니다. 이법원은 합리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이 결정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법이 잘못 적용되어 판결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柚子의 상고이유 중 일부가 성립하고,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합니다. 중화인민 공화국 민사소송법 170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민사판결 제1항(2015) Jing Zhi Min Chu Zi No. 631을 지지합니다.
- 2.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민사판결 2항 및 3항 취소(2015) Jing Zhi Min Chu Zi No. 631;
- 3. 柚子는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RMB 500,000의 경제적 손실을 數字天堂에 배상합니다.
- 이 판결이 발효될 때 합리적인 지출 210,000위안
- 4. 數字天堂의 기타 주장을 거부합니다.

이 판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 동안의 채무 이자는 2배가 된다.

1심 소송 접수 수수료는 34,800위안에 대해 數字天堂이 10,000위안(유료), 柚子가 24,800위 안입니다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 2심 소송 수리비 17,940위안은 數字 天堂이 10,000위안을 부담하고 (본 판결에서는 발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柚子는 7,940 위안(유료)을 지급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재판장 류샤오쥔 판쉐 판사 장창 판사 2019년 11월 6일 서기 송 솽